

# 정책동향

POLICY TREND

## 산업자원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제도 전면 개선

산업자원부는 2003년 5월부터 추진해온 「전략물자 수출 통제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발생한 전략물자 불법수출사례를 통해 드러난 수출통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략물자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물자수출입공고를 전면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금번공고는 산업자원부가 2003년 5월부터 추진해온 수출통제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사항들을 입법 조치화하는 것으로 수출업체 및 전략물자 제조업체의 숙지가 필요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 통제품목, 캐치올(Catch-all)품목 등으로 구분되던 것이 1·2종전략물자로 구분되고,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1종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비전문가도 판단 가능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며 또, 기업의 자율준수체제를 도입, 이를 성실히 운영하는 기업을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해

수출허가신청시 일부첨부서류의 제출시기 연기 및 포괄수출허가신청자격 부여 등의 특혜를 줄 계획이다.

산업자원부는 「공고내용의 명확성」과 「업계의 이용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전략물자수출입공고의 개정작업을 통해 통제대상물품과 통제대상지역의 명확화 및 자율준수체제의 명시적 도입 등을 수출업계에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동안 산자부의 전략물자수출입공고와 전략기술수출공고가 양립함으로서 소프트웨어, 물자와 기술이 결합된 거래대상 등의 경우, 수출허가기관의 소관과 관련된 민원인의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두 공고를 통합키로 하였으며, 1종전략물자의 규격과 사양을 국제체제에서 통보된 영어원문과 한글번역의 대비형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전략물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돋도록 하였다.

## 산업자원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2.25%로 최저 금리로 인하

산업자원부는 국고채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기준금리가 2004년 10월 1일부터 前분기

대비 0.75%p 인하되었다



세부사업별로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지원자금이 4.25%에서 3.50%로, 에너지절약시설설치 및 대체에너지보급사업 지원자금이 3.0%에서 2.25%로 각각 인하됨으로써, 지난 '95년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출범 이후 가장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04년 9월 15일부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지원금리(고정금리 기준)를 종전의 年 5.25%에서 年 3%로 대폭 인하하였다.

이번 금리 인하조치에 따라 2001년 9월 27일 이후 에너지

이용합리화자금을 대출 받아 사용하고 있는 기업 및 개인(총 4,672건, 1조 2771억원)의 이자부담액이 연간 96억원 가량 경감되어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속되는 고유가의 영향으로 산업체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가 늘어나 올해 계획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4,749억원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04년 추경 예산으로 450억원을 추가편성하여 지난 9월 6일부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및 집단에너지사업 투자자금 등으로 지원중이다.

## ■ 산업자원부, 중소기업 디자인 혁신을 위해 “디자인 홈닥터” 운영

산업자원부는 디자인 개발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고,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영지원·디자이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 홈닥터 사업』을 실시한다.

동 사업은 현직 디자이너, 미취업 디자이너, 대학교수 등으로 『디자인 홈닥터팀』을 구성하며, 『디자인 홈닥터팀』이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컨설팅(자문·지도·개발)도 한다.

디자인 홈닥터 사업의 특징은 ▲ 중소기업의 디자인 지원을 하는 동시에 미취업 디자이너를 활용하여 디자이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며, ▲제품의 디자인 개발비 지원 보

다는 중소기업에 디자인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고, 디자인과 관련한 일상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전액 정부지원을 통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디자인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대상은 ▲ 디자인 개발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 디자이너 미보유 기업으로서 디자인 자체 개발능력이 취약한 기업,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산업 분야의 기업 중 디자인이 필요한 기업등이며, 지원분야 ▲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시각 디자인 분야, ▲환경 디자인 분야 ▲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분야로 올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로 수시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www.eda.or.kr](http://www.eda.or.kr)의 2004 디자인 홈닥터 사업 참조)

## ■ 산업자원부, 중국 진출기업 애로 해결 등 본격 지원

산업자원부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투자기업의 경영애로해소 등의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위해 중국 북경 KOTRA 무역관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韓國投資企業支援中心)」 개소를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지원센터 설치배경은 2002년부터 중국이 제1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한 가운데, 해외투자 금액의 40%, 해외투자업체의 60%가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중국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對中 투자기업의 성공비율이 높지 않고, 그동안의 지원활동도 지원기관간 연계성 미흡, 유사 업무의 중복수행, 분산된 지원활동 등으로 인해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애로해소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중국의 KOTRA 북경무역관에 설치되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는 KOTRA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기관의 각종 지원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투자기업의 경영애로를 접수, 파악하여 정부 및 유관기관을 통해 해결해주는 “Call Center” 기능을 수행하고, 아울러 KOTRA, 대한상의, 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될 “지원기관 협의회”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여, 駐中 한국대사관 상무관과의 긴밀한 연계하에 지원기관간 횡적 정보교류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할분담 및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업현황 및 애로사항 수집이 필수적이므로, 진출기업 및 중국 전문가 DB를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인 실태조사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경영애로 사항이나 투자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거나, 정부간 공식·비공식 채널(한중 투자협력위원회, 한중 무역실무회담, 在中 경영지원교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아울러 이번 북경 센터 설치를 계기로 점차 상해, 청도 등 주요 거점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산업지원부, “수도권 소재기업

산업지원부는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입지보조금,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이외에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금(투자보조금)을 신설·지원하기로 하였다.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지방이전기업의 이전초기비용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며, 소규모 용지를 사용하는 지식·기술집약적 기업이 지방 이전시에도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투자보조금은 이전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이전 및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금액을 평가·산정하여 투자초기시점에 지원하되, 투자완료 후 실제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기지원금액과 비교하여 사후정산하게 된다.

## 지방 이전시 지원

이를 위해 산업지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업지방 이전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 고시하였으며, 금번 개정되는 지원기준에는 투자보조금 신설 이외에도 공장·건물에 대한 임대료 지원신설 및 상시고용인원 확인요건 완화도 포함되었다.

즉, 현행규정상으로는 토지를 임대할 경우에만 임대료를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공장·건물을 임대할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 이전기업 요건인 고용규모(100인)를 산정함에 있어 종래 근로소득세 납부가 증명된 경우로만 하던 것을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납부가 증명될 경우까지로 확대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였다.

〈참고〉 지방이전기업 재정자금 지원기준 기준안과 개정안 비교

원 산 지	기준내용	개정내용
○건축비·시설비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지원규정 없음	○건축비·기반시설설치비·시설장비구입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정 신설
○공장·건물에 대한임대료 지원	○지원규정 없음 - 토지에 대한 임대료 지원만 규정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할 경우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보완
○상시고용인원의범위 확대	○근로소득세의 납부가확인된 자	○근로소득세 또는 2대보험료 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확인된 자 -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